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70

제출년월일 : 2023. 5. 24.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급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문 정비 (안 제3조의2)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에 따름
  - ☞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 상향
    (서울특별시 7만원→10만원, 광역시 6만원→8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7만원)
- 안산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 삭제

☐ 개정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3. 5. 2. ~ 5. 12. (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전문) : 【붙임 5】

○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별표 1”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안자	실·과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 영 식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무팀장 최 지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실 (행정 3071)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td><td>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td></tr>
<tr><td>[별표 1]

[별표 1] <개정 2017. 7.25., 2019.11.08.>

(단위 : 원)

<table>
<tr><th>구분</th><th>철도 운임</th><th>선박 운임</th><th>항공 운임</th><th>자동차 운임</th><th>숙박비 (1박당)</th></tr>
<tr><td>제1호</td><td>실비 (특실)</td><td>실비 (1등급)</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제2호</td><td>실비 (일반실)</td><td>실비 (2등급)</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td></tr>
</table>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td><td><삭 제></td></tr>
</table>